[서식 예] 지분금청구의 소(동업관계)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지분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1. 원고는 20〇〇. 〇. 〇. 이웃 친구인 피고와 함께 1,500,000원씩을 출자하여 커피자판기를 공동 구입하여 버스정류소 앞 빌딩 현관에 설치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 2. 원고와 피고는 1주일씩 교대로 위 자판기를 관리하여 왔으며, 구청에는 피고가 그 관리자로 신고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관리하던 20〇〇. 〇. 〇. 덤프트 럭 1대가 인도로 돌진하여 위 자판기를 충격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자판기가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 3. 피고는 같은 해 ○. ○. 위 덤프트럭의 차주인 소외 ◈◈◈로부터 위 자판기파

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새로운 자판기를 다/ 첫 입하지도 않고 위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코 의 동업관계에 관련하여 청산할 다른 채권이나 채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동업관계의 파기 및 동업재산인 위 손해배상금 3,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1,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를 20○○. ○. ○○. 내용증명우편으로 통고하였으며, 그 통고서는 20○○. ○○. 피고에게 도달되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업재산인 위 손해배상금 3,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영수증1. 갑 제2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1. 갑 제3호증합의서1. 갑 제4호증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각 1통1. 소장부본1통1. 송달료납부서1통

 2000.
 0.
 0.

 위 원고
 000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타	 • 2인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하여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는 탈퇴당시라고 보아야 합(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음(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 7157 판결). • 일부 조합원이 동업계약에 따라 동업자금을 출자하였는데 업무집행 조합원이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거나 혹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끝내 동업체의 동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끔 만들고, 조합원이출자한 동업자금을 모두 허비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동업자금을 상실하여 버린 조합, 즉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라 할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동업자금을 출자한 조합원에게 손해가반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과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아니고, 조합체를 구성하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인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60484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

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⁸ 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467 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